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전갑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5
----------	------

발의일 : 2015. 10. .

발의자 : 전갑봉·신희근·서정택·강한옥·이봉준·김재열·
김명기·김현상·김순희·최민규·김주은·김성근(12명)

1. 제안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의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 나.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안 제6조, 제7조)
- 다. 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안 제8조)
- 라. 소음저감 사전심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 마.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음·진동 관리법」,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1) 제 정 안 : 별 첨
 - (2) 입법예고(2015. 10. . ~ 2015. 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 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칙 제20조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
4.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소음·진동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소음에 대하여 관련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측정결과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에 따른다.

제8조(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규칙 제20조제2항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 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